

제315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국회 사무처

2013년4월29일(월) 오후 2시30분

## 의사일정

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製造物責任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別法 폐지법률안
15.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향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密航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2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3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4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
42.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
43.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44.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우윤근 · 김우남 · 박영선 · 김동철 · 원혜영 · 강기정 · 문병호 · 노웅래 · 홍영표 · 신장용 · 전병헌 · 김상희 · 조정식 · 김성곤 · 이상민 · 배기운 · 심재권 · 정성호 · 신경민 · 전하진 · 이춘석 · 민홍철 · 이종훈 · 강석훈 · 장병완 · 서영교 · 유대운 · 김기준 · 이상직 · 홍종학 · 김재운 의원 발의) ..... 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우윤근 · 김우남 · 박영선 · 김동철 · 원혜영 · 강기정 · 문병호 · 노웅래 · 홍영표 · 신장용 · 전병헌 · 김상희 · 조정식 · 김성곤 · 이상민 · 배기운 · 심재권 · 정성호 · 신경민 · 전하진 · 이춘석 · 민홍철 · 이종훈 · 강석훈 · 장병완 · 서영교 · 유대운 · 김기준 · 이상직 · 홍종학 · 김재운 의원 발의) ..... 4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4. 製造物責任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 · 이철우 · 김태원 · 정두언 · 서상기 · 조원진 · 김세연 · 강은희 · 이에리사 · 주영순 의원 발의) ..... 6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 · 이우현 · 서상기 · 민현주 · 김윤덕 · 김성찬 · 김태원 · 이만우 · 李宰榮 · 박인숙 · 이종진 의원 발의) ..... 6
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정희수 · 유성엽 · 배기운 · 전정희 · 김성주 · 김윤덕 · 김세연 · 강동원 · 김성곤 의원 발의) ..... 6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김세연 · 김태년 · 김태원 · 박성호 · 서상기 · 유성엽 · 유은혜 · 이용섭 · 정성호 · 정진후 의원 발의) ..... 6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신경민 · 이춘석 · 우원식 · 이인영 · 이목희 · 홍종학 · 유은혜 · 박완주 · 노영민 · 설훈 · 유인태 · 최동익 · 우윤근 · 홍익표 · 진성준 · 윤관석 · 노웅래 · 심재권 · 이상호 · 도종환 · 김태년 · 유대운 · 유승희 · 김광진 · 장하나 의원 발의) ..... 6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1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14. 時局事件關聯教員任用除外者採用에 관한特別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6
15.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오제세 · 김을동 · 문정림 · 강석호 · 김태원 · 정의화 · 김춘진 · 김태흠 · 박완주 의원 발의) ..... 8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권성동 · 김태원 · 윤상현 · 김명연 · 홍지만 · 이장우 · 정문헌 · 손인춘 · 박대출 · 김도읍 ·

	황영철 · 염동열 · 김희정 · 박성효 · 조해진 · 신의진 · 김춘진 · 이한성 의원 발의) .....	8
1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김동완 · 류지영 · 강기윤 · 강은희 · 박인숙 · 민병주 · 유승우 · 유재중 · 윤영석 · 이만우 · 이종진 · 주호영 의원 발의) .....	8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8
21.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2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2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25.	密航團東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2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정희수 · 이이재 · 김태흠 · 박상은 · 한선교 · 염동열 · 이재영 · 안효대 · 오병윤 의원 발의) .....	10
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 · 이명수 · 안효대 · 박수현 · 이종진 · 윤진식 · 이재균 · 이장우 · 조현룡 · 이이재 · 이현승 의원 발의) .....	11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박대동 · 김성찬 · 안홍준 · 원유철 · 강석호 · 이재영 · 김태원 · 이한성 · 함진규 · 이우현 · 고희선 · 강은희 의원 발의) .....	11
3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 · 장하나 · 이상직 · 김경협 · 유성엽 · 배기운 · 오영식 · 홍의락 · 유대운 · 한명숙 · 전해철 · 문병호 · 박완주 · 신경민 · 김민기 · 민홍철 · 오제세 · 이종훈 · 심상정 · 최동익 · 유은혜 · 홍종학 의원 발의) .....	11
31.	부도공공건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2
3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2
33.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3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 · 류지영 · 박대출 · 손인춘 · 이상일 · 이이재 · 정문헌 · 홍문종 · 홍지만 · 황영철 의원 발의) .....	12
37.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유대운 · 심재철 · 이찬열 · 전해철 · 조정식 · 조정태 · 강기정 · 노영민 · 정청래 의원 발의) .....	12
38.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2
40.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15
4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최동익 · 배기운 · 이낙연 · 최원식 · 한정애 · 안홍준 · 한명숙 · 민홍철 · 전해철 · 문정림 · 도종환 · 남인순 · 전병헌 의원 발의) .....	15
42.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민홍철 · 윤후덕 · 조정식 · 남인순 · 김기준 · 부좌현 · 김관영 · 문병호 · 박남춘 · 서영교 · 김경협 · 홍의락 · 김현 · 진성준 · 김성곤 · 홍종학 · 강창일 · 김춘진 · 김우남 · 이용섭 · 김성주 의원 발의) .....	16
43.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7
4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심상정 · 김제남 · 한명숙 · 박원석 · 서기호 · 정진후 · 유성엽 · 김춘진 · 강동원 · 김성곤 · 배기운 · 도종환 · 노웅래 · 은수미 · 장하나 · 김태원 · 이해찬 · 남인순 · 홍영표 · 이미경 · 유기홍 · 주영순 · 홍종학 · 김경협 · 한정애 · 이완영 의원 발의) .....	17
o	5분자유발언 .....	18

(14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김무성 의원, 이완구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우윤근·김우남·박영선·김동철·원혜영·강기정·문병호·노웅래·홍영표·신장용·전병헌·김상희·조정식·김성곤·이상민·배기운·심재권·정성호·신경민·전하진·이춘석·민홍철·이종훈·강석훈·장병완·서영교·유대운·김기준·이상직·홍종학·김재윤 의원 발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우윤근·김우남·박영선·김동철·원혜영·강기정·문병호·노웅래·홍영표·신장용·전병헌·김상희·조정식·김성곤·이상민·배기운·심재권·정성호·신경민·전하진·이춘석·민홍철·이종훈·강석훈·장병완·서영교·유대운·김기준·이상직·홍종학·김재윤 의원 발의)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製造物責任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45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김영주**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품을 추가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희생·공헌자 등을 대신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희생·공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희생·공헌자 등을 대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희생·공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7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1인, 기권 5인으로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54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5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민병주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중독 예방조치를 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품질인증 취소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률의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문장을 국민이 알고,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7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이철우·김태원·정두연·서상기·조원진·김세연·강은희·이에리사·주영순 의원 발의)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이우현·서상기·민현주·김윤덕·김성찬·김태원·이만우·李宰榮·박인숙·이종진 의원 발의)

**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정희수·유성엽·배기운·전정희·김성주·김윤덕·김세연·강동원·김성곤 의원 발의)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김세연·김태년·김태원·박성호·서상기·유성엽·유은혜·이용섭·정성호·정진후 의원 발의)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신경민·이춘석·우원식·이인영·이목희·홍종학·유은혜·박완주·노영민·설훈·유인태·최동익·우윤근·홍익표·진성준·윤관석·노웅래·심재권·우상호·도종환·김태년·유대운·유승희·김광진·장하나 의원 발의)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4.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4시59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기홍 의원이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유기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입학전형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입학전형료 상한 금액 및 반환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품 알레르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고, 사전에 학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에 제재조치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사자격증 교부를 교육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그 발급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원연금법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

로 공무원연금법 준용 조문 중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원장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응급조치 의무 주체에 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추가하고,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평가 체제가 바뀔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시군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은 관련 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5인 중 찬성 232인, 기권 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2인 중 찬성 242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6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오제세·김을동·문정립·강석호·김태원·정의화·김춘진·김태흠·박완주 의원 발의)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김기선·권성동·김태원·윤상현·김명연·홍지만·이장우·정문헌·손인춘·박대출·김도읍·황영철·염동열·김희정·박성효·조해진·신의진·김춘진·이한성 의원 발의)

**1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윤재옥·김동완·류지영·강기윤·강은희·박인숙·민병주·유승우·유재중·윤영석·이만우·이종진·주호영 의원 발의)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4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5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기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원도 원주 출신 김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인허가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명시해서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토지 등의 수용 등 보상 주체와 도로 점용 인공구조물 등에 이설비용 부담 주체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인허가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명시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물의 권리권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 권한을 폐지하여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민주화운동에 1960년 3·8 대전 민주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

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거짓신고의 처벌 수준을 현행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원 의원, 홍문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무인단속 카메라로 교차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임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고, 영업정지 요건에 대해서는 모든 영업정지 처분 시 청문을 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7인 중 찬성 238인, 기권 9인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7인 중 찬성 242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7인 중 찬성 245인, 기권 2인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7인 중 찬성 241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0인 중 찬성 223인, 반대 9인, 기권 18인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9인, 기권 1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8인 중 찬성 247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密航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정희수·이이재·김태흠·박상은·한선교·염동열·이재영·안효대·오병운 의원 발의)**

(15시27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2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김재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자 중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정부가 제출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의 개시 등 신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명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것이며,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20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형법 체계에 맞게 벌칙조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의 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4인 중 찬성 229인, 기권 5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9인 중 찬성 236인, 기권 3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4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밀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6인 중 찬성 243인, 기권 3인으로서 밀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7인 중 찬성 242인, 기권 5인으로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36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7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연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연주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가결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연주 의원, 노웅래 의원, 이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추가하고, 둘째 수입식품 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를 두며, 셋째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넷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섯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1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이명수·안효대·박수현·이종진·윤진식·이재균·이장우·조현룡·이이재·이현승 의원 발의)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박대동·김성찬·안홍준·원유철·강석호·이재영·김태원·이한성·함진규·이우현·고희선·강은희 의원 발의)

## 3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신계륜·장하나·이상직·김경협·유성엽·배기운·오영식·홍의락·유대운·한명숙·전해철·문병호·박완주·신경민·김민기·민홍철·오제세·이종훈·심상정·최동익·유은혜·홍종학 의원 발의)

- 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3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33.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윤상현·류지영·박대출·손인춘·이상일·이이재·정문현·홍문중·홍지만·황영철 의원 발의)
- 37.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유대운·심재철·이찬열·전해철·조정식·조정태·강기정·노영민·정청래 의원 발의)
- 38.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5시41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31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이노근**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도지역 구분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강창희 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시농업 약칭 정의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철거명령, 재정지원 및 기금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실태조사 실시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윤근 의원, 이윤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 시행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보증자리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체결한 계약서에 한해 임대보증금이 보전되도록 하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이후라도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여 보증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의 분양 전환 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을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홍준 의원, 조현룡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

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목록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제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을 하고, 둘째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기술인력 체계와 설계·감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기술업역을 각각 통합하며, 셋째 공공부문의 건설 사업을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시도 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려는 것으로 약칭 정의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안은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가산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담금 납부기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7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통계획을 이 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가산금 독촉기한 등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교통계획을 통합할 때 각각의 계획에서 고려할 필요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비율은 현행대로 하되 감면 중복에 대해서는 법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백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국도 휴게소 등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개량건널목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윤석 의원님, 이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의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3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7인 중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공  
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기권 5인으로서 부  
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1인  
으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6인  
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  
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지  
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8인  
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17인, 반대 8인, 기권 10  
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0인, 기권 16  
인으로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9인 중 찬성 235인, 기권 4인으로서 건  
물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0.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 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4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 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최동익·배기운· 이낙연·최원식·한정애·안홍준·한명숙· 민홍철·전해철·문정림·도종환·남인순· 전병헌 의원 발의)

(16시03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40항 일본각료 등  
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  
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  
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안홍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건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일본각료 등의 야스  
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  
안은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를 포함

한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  
는 망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일본 인사들의 뼈뿔  
어진 역사 인식에 근거한 몰염치한 망동과 망언  
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적 수  
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  
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일부 각료 등이 야스쿠니신사를 참  
배한 것과 일본총리 등이 일제 침략전쟁을 부인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도발행위라는 점에  
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비이성적 망  
동과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하여 철  
저히 반성하고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  
며,

넷째,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  
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대처  
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최동익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의 권리  
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  
의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당시 상  
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유보하였던 제25  
조마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상법 제732조의 제  
정 취지와 달리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별적·구체적 상황  
에서 심신박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결의  
안의 주요 내용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대  
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일본각료 등의 야

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으로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민홍철·윤후덕·조정식·남인순·김기준·부좌현·김관영·문병호·박남춘·서영교·김경협·홍의락·김현·진성준·김성곤·홍종학·강창일·김춘진·김우남·이용섭·김성주 의원 발의)

(16시10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42항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송영근**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입니다.

민홍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79년 12·12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전사령부에 진입한 군사 반란군에 맞서 사령관과 군 지휘 체계를 지키기 위해 항거하다가 의롭게 죽은 고 김오랑 중령의 군인정신을 추모하고 후세에 참군인상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2·12 군사반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반란군의 사격에 의하여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하여 훈장 추서를 촉구하고,

둘째,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사관생도의 신조를 몸소 실천한 김오랑 중령의 추모비를 모교인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건립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12 사태가 대법원에 의해 군사반란으로 명확해지고 12·12 군사반란 주동자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서훈을 취소한 만큼, 군사반란에 맞서 저항하다 희생된 김오랑 중령은 대한민국 참군인의 표상이라 하겠고, 특히 상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군인정신은 후예 군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훈장 추서와 기념비 건립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시에 전투에 참여하여 무공을 세운 것이 아닌 까닭에 상훈법상 훈장수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거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부가 그동안 훈장 추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상훈법에 따르더라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으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난상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은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43.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4.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심상정·김제남·한명숙·박원석·서기호·정진후·유성엽·김춘진·강동원·김성곤·배기운·도종환·노웅래·은수미·장하나·김태원·이해찬·남인순·홍영표·이미경·유기홍·주영순·홍종학·김경협·한정애·이완영 의원 발의)

(16시15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43항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44항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용익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및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경상남도가 경영난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자 함에 따라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둘째,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은 희생 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셋째, 중앙정부는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은 가슴기 살균제의 사용으로 생명권 및 건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구제를 촉구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결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슴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고, 가슴기 살균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원하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6개월 내에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25인, 반대 32인, 기권 44인으로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5인으로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은 복

지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16시21분)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조속한 처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기 부진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경제는 2011년 2/4분기 이후 지금까지 8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1% 미만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출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지속 상승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그 최선의 선택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엔저 정책을 통해 경제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첫 번째 정책은 1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분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국회의 역할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동성 부족과 엔저의 영향으로 자금 경색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절실합니다. 중소기업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꺼져 가는 경제 활력도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잘못된 세수 예측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며칠 전 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결손은 행정부만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세수 결손의 규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정책목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부도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책은 소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때를 못 맞추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실기를 하게 된다면 경기회복 효과도 기대했던 것보다 반감될 수 있고, 또 서민들이 더 어려워져서 향후 보다 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이 경기활력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직접적으

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돼서 어려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 농해수위·예결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바라는 차원에서 추경 편성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으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이번 추경안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추경안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빚더미 편법 졸속 추경입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가계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이 아닙니다.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졸속 추경입니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중기재정전망을 고수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혀 수정도 수반되지 않았습니

다. 또한 국채 발행에 필수적인 채무상환계획뿐만 아니라 사업성과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졸속 추경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추경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정부 추경안은 17조 3000억 원 중 12조 원은 부족한 세입 보전을 위한 것이고,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세출예산은 기껏 5조

3000억 원뿐입니다.

게다가 세출안 5조 3000억 원 중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국가보조지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지원금,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채이자 상환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3조 9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둘째, 세출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2조 7300억 원이 토목 및 건설 중심의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창출예산은 4000억 원으로 총세출 대비 5.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추경예산 가운데 87%가 댐이나 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이명박정부 말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토목사업예산이 상당 부분 부활한 예산안입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추경 재원으로 15조 8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3조 9000억 원의 실제 세출을 위해서 무려 4배가 넘는 15조 8000억 원의 빚을 지겠다면서도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향상 대책으로 경기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재정수지는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 채무도 증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국가 채무 기준은 GDP 대비해서 71%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MB 정부는 대선을 겨냥해서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성장률을 부풀리고 과도한 세수입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역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세 가지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는 12조 원의 세입 보전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세출을 조정함으로써 민생 및 복지 지원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SOC 사업 비중을 조정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사회적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국제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이번 추경이 졸속 추경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 가지 안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갑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기재위에서 통과된 수정 법률안을 보면 85㎡와 6억 이하로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제가 어렵고 주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 2만 7000여 채가 있고 수도권에 1만 5600여 채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기존 주택과 또 악성 미분양 주택을 6억에서 9억으로 상승시켜 주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경제 도약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를 다 지어 놓고 준공은 났는데 어두컴컴한 2만 5000채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대형 건설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대형 건설이 부도가 나면 결국은 서민들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수백 개, 수천 개의 하청업체 또 수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한편으로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외국에서 받은 물량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면 그 업체들은 결국은 외국에서 발주받은 수주도 취소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

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2년도에 건설업체가 441곳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만큼 건설 경기가 지금 바닥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사람의 신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와 경기와, 건설 경기는 지금 위암, 간암에 걸려 있는데 한쪽 암만 수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6억을 9억으로 해서 기존 주택과 그동안 악성 미분양 주택을 이제는 정부나 또 우리 정치권에서 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또 2012년 9월 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명박정부에서 9억 이하로 양도세 혜택을 줬는데 그래도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 그 건설 경기가, 이번에 6억으로 하면 오히려 지금 건설을, 준공을 해 놓은 수많은 아파트가 더 악영향을 받고 또 국민의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박근혜정부가 4월 1일 부동산 대책 효과를 내놓았습니다. 새 정부에서 국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여야 의원님들은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동참해 주고…… 이제 우리도 선진화법을 통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든 것을 개방하고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영업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야 정치인 모두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수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국민들의 어려움, 자살하는 그런 국민들이 왜 했는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폭넓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 성동을 출신 홍익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한 남북관계에 대한 답답함과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진협정 백지화 발표로 한반도의 휴전 상태가 파기되었고 미국의 최신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모의 핵폭격 훈련을 하고 핵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기동훈련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종군 기자들이 서울로 모여들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 상태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오늘 북한의 위협 발언은 줄어들었고 미국의 최신 폭격기들과 핵잠수함은 더 이상 한반도 주변에서 볼 수 없으며 종군기자들 역시 서울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종료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개성공단의 폐쇄에 따른 말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과 남북관계 파탄의 흔적뿐입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10여 년간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의 경제적 활로였을 뿐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의 폐쇄로 대한민국은 경제적 이득과 안보상 이득 둘 다를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과정에서 보여 준 박근혜정부의 무능력함은 그 어떤 비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개성공단은 조성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주변에 밀집된 북한의 2군단과 6군단 관할 포병 화력을 15km 북방으로 후퇴하여 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수도권 안전이 그만큼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개성공단 설립 개념에 반대했던 미국도 개성공단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북한의 포병 화력이 다시 전진 배치되면 지난 10여 년간 사라졌던 위협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의 폐쇄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중단 조치 당시 국가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남북 간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을 억류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며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즉각적인 대화 제의를 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엔 대화국면이 아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지연시키다가 결국 실기했습니다.

야당과 개성 입주기업들이 계속 대화 제의를 하라고 하니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대화 공세가 아니라, 택한 것이 대화 공세와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결국 개성공단 폐쇄를 초래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가 예전과는 다르다며 이번에는 중국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정책은 종전과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MB 정권과 다를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신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를 입증할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와 관계부처 간 서로 다른 주장으로 인해 정책 혼선만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 혼선은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더욱 험클어트렸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로 이끈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임은, 이러한 정책의 혼선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독수리 훈련이 종료됩니다.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면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냉정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 훈련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MD 시스템을 배치하였고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가끔 잔인할 정도로 과거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집단에게 비슷한 시련을 되풀이하게 만들곤 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핵실험과 대규모 무력 동원 및 군사훈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위기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담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인내심과 중장기적 전략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강서구를 출신 김도읍 의원입니다.

저는 본질을 벗어나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이 마치 국가기관의 정치 공작 차원으로 변질되어 정치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 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법을 초월한 정치 공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첫째, 진정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이 선거 개입인지, 둘째 국정원 여직원을 44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민주당의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든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먼저 댓글 문제입니다.

본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 여직원이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올린 120여 개 댓글의 성격입니다.

댓글이 올려진 오늘의 유머는 중북·친야 성향의 사이트입니다. 상식적으로 진정 선거 개입의 목적이 있었다면 부동층이 많이 몰리는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댓글 중에

는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유머의 하루 평균 순 방문자 수는 6만 5000여 명으로 방문자 순위 330위에 불과한 사이트입니다. 어느 누가 선거 개입을 하면서 방문자 수 330위의 사이트에 댓글을 달겠습니까? 오늘의 유머의 가장 인기 있는 게시글은 조회수가 1만 회 남짓입니다. 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까지 꼼꼼히 읽는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야당은 이러한 오늘의 유머의 게시글도 아닌 하루 1건 정도의 댓글을 통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또 그 결과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북·친야 성향의 방문자 순위 330위 사이트에 하루 1건 정도의 댓글 120여 개 달았다고 108만 표 차이로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선거 개입인가의 문제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입니다.

현행법이 아닌 이상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감금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의해 20대의 한 여성이 혼자서 44시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자기가 문을 안 열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민주당 당직자들이 위력을 통해 영장도 없이 현행법도 아닌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20대의 처녀가 44시간 동안 갇혀 얼마나 무서운 공포에 떨었을지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직원의 집 앞에 있었던 민주당 한 의원의 TV 녹취 내용을 보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경찰이나 검찰에서 영장을 갖고 와 들여다보는 수밖에 더 있나’라는 대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법적으로 여직원을 감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자기 부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울러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자동차를 들이받기

까지 하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사건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사정당국은 형평에 맞게 국정원 여직원 감금 고발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 다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병석**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법은 상대방 국회의원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는 겁니다. 또 공방의 기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입니다.

여전히 국정원 사건 때문에 나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아침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 정치 개입과 국기 문란 행위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수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찰 수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검증 포인트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첫째,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이 어떤 목적과 어떤 형태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국정원이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주요 국정 현안들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를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한 검증 작업과 함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김용관 전 청장이 어떤 의도로 터무니없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 조작의 과정에서 일반인 보조요원인

PA를 고용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일반인 이모 씨가 국정원 김 씨를 도와서 인터넷상에서 여론 조작 업무를 했다는 사실이 경찰에 의해 드러났을 때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의혹입니다.

본 의원은 2월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IP 분석과 활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히 한두 명의 국정원 직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적 조력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그룹의 ID들을 통해 추정컨대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20대 초반의 젊은층들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활동에 조력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IP와 동일한 IP와 ID 그룹에서 작성된 글에는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혀 관계없다고 하셨으나 들어보시지요. ‘안철수는 문재인을 밀어주고 하산했으면……’ ‘정당을 만든다는 거냐, 안 만든다는 거냐?’ ‘자기들 경선조차 개관 5분 전으로 만든 정당이 정부 운영은 잘하겠나?’ 등 노골적으로 야당의 대선 과정을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대선 개입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여론 조작 혐의는 병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정원 여자는 스스로 자기를 감금시킨 거지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이렇게 4개월 동안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지요.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야말로 너무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정치 개입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더 큰 실체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기사에 봐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시글의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대선 개입이나고 묻는 아전인수는 이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헌법의 삼권분립의 가치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라면 국가기관이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새누리당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국민들 앞에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국정원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모략이다, 개인 오피스텔에 컴퓨터 1대를 가지고 정치공작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부인하고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을 운운하며 야당과 야당 후보를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하루속히 국정원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선부른 판단으로 야당 후보를 비판했던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검찰에게 지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석** 여기도 인사하고 가세요.

끝까지 상대방 의원님의 발언을 경청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김제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원전안전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년 전 후쿠시마 핵 사고를 통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원전에서 정전사고 은폐, 마약 투약, 짝퉁·위조부품, 품질보증서 위조까지 수많은 원전비리와 고장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도 냉각수 누출, 제어봉 제어시스템의 고장이 반복되면서 많은 원전이 멈춰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 불안합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해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노후 원전은 폐쇄하는 정책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발전은 운영 중의 안전뿐만 아니라 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용후핵연료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우리가 핵발전을 통해 값싼 전력을 얻은 대가입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안면도·굴업도·부안사태 등 방폐장 건설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해야 합니다. 공론화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론화는 미래세대에게 핵폐기물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전제로 출발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범위와 총량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향후 원전의 비중을 늘리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원전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주제, 방식, 일정에 이르기까지 백지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에 임기 내 중간 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결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공론화는 말잔치로 그칠 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최근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미 91년 우리나라는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비핵화선언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남북한 간 긴장과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는데 한반도 평화관리기제와 평화프로세스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은 비핵화선언을 다시금 확인하고 지켜 나갈 의미 있는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은 초기 연구단계입니다. 더욱이 새로운 소듐 고속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파이로프로세싱도 핵무기 개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고속증식로는 소듐냉각제 위험은 물론이고 그 개발까지 수십 년이 소요됩니다. 전 세계에 상용화한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 몬주 고속증식로도 14조 원 이상 예산을 들였지만 이제 폐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개발하더라도 20년, 2050년 이후에나 상용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재생에너지 전환의 길이 더 빠르고 지속가능한 길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방사능 오염과 피해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숙의와 지혜를 거듭하며 민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핵발전의 남용과 위험으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꼭 의결되어서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인 지방

의료원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국민 70%의 염원을 저버리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독재행정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 명에서 25만 명의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용해 온 병원이었습니다. 5년 전 신도시 예정지역에 너무 일찍 이전해서 일시 경영위기가 왔지만 작년 10월에 진주의료원 노사가 합의하고 경상남도 지사직무대행이 승인하고 경상남도 의회에 보고한 경영개선계획을 실행하고 있던 차에 12월 19일 보궐로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가 어느 누구와도 의견수렴이 없이 갑자기 폐업방침을 발표한 때로부터 위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강제 해고당했고 직원들은 도의 압박 때문에 230여 명 중에 100여 명이 명예 퇴직 했고 환자들도 병원을 옮기라는 압력 때문에 213명 중 현재 1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공의료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병원을 황폐화시키고 귀한 생명의 죽음을 재촉하게 만든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무력증,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61세 여성 환자는 퇴원 압박에 못 이겨서 병원을 옮긴 지 8일 만인 그제, 4월 27일에 갑작스럽게 운명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휴·폐업 추진 뒤의 일곱 번째 사망자입니다. 의료진이 앰블런스로 이송할 경우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며 이송불가 판단을 내렸음에도 경상남도가 퇴원 압박을 계속하였고 이런 죽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지방선거와 대선을 겨냥하여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주의료원을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진주의료원 휴업기간이 끝납니다. 폐업이나, 정상화나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우리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계십니다.

공공병원 병상비율이 10%밖에 안 되어서 OECD 국가 중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경상남도가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했다는 오명을 얻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막아 주십시오.

일제시대에도 존재했던 지방의료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강제로 문 닫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구해 주십시오.

진주의료원이 폐업사태의 아픔을 딛고 전국에

서 가장 훌륭한 공공병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오늘 본회의에 끝까지 참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쌍시옷 발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훌륭한 법률안을 많이 상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호창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언주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43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세연 김영주 김우남 김재연 김종태 김춘진 김태흠 김현미 김희국 남인순 류성걸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범계 박성효 박주선 박홍근 백재현 서병수 손인춘 신경림 신성범 심상정 심학봉 안철수 염동열 원혜영 유승민 윤관석 윤진식 이노근 이상규 이완영 이원욱 이인제 이찬열 이학영 이해찬 임내현 전병헌 정몽준 정수성

김성주 김승남 김永柱 김윤덕 김재원 김종훈 김태년 김학용 김현숙 김희정 노웅래 류지영 문희상 민홍철 박덕흠 박병석 박수현 박지원 배기운 서영교 송광호 신계륜 신의진 심윤조 안규백 안홍준 오병윤 유기준 유승우 윤명희 윤후덕 이만우 이상일 이윤섭 이자스민 이종진 이채익 이학재 이현승 임수경 정문헌 정진후

김성찬 김영록 김영환 김을동 김재윤 김진태 김태원 김한표 김형태 김형태 나성린 노철래 문병호 민병두 박기춘 박민수 박상은 박원석 박창식 배재정 부좌현 설훈 송영근 신기남 신장용 심재권 안덕수 안효대 오제세 유기홍 유인태 윤상현 은수미 이명수 이언주 이우현 이이재 이종훈 이철우 이한구 이현재 장병완 전정희 정병국 정청래

김성태 김영우 김용태 김장실 김정록 김진표 김태환 김현 김희선 남경필 도종환 문재인 민병주 박남춘 박민식 박성호 박인숙 박혜자 백균기 서기호 성완중 송호창 신동우 신학용 심재철 안종범 양승조 원유철 유대운 유일호 윤재옥 이낙연 이미경 이완구 이운룡 이인영 이재영 이진복 이춘석 이한성 인재근 장윤석 정갑윤 정성호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문병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43인, 기권 의원 없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37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안 중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우 남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제 세	원 유 철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연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중 태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인 태	유 일 호	김 중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국
이 미 경	이 상 일	이 언 주	이 완 구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李 宰 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호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서 영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동 익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정 애	함 진 규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중 범	안 철 수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중 학	오 병 윤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흥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황 진 하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반대 의원(5인)**

김 미 희	김 선 동	김 재 연	오 병 윤
이 상 규			

**기권 의원(2인)**

전 순 욱	한 명 숙
-------	-------

○製造物責任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중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언 주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도읍 김무성 김성곤 전순옥  
(장병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42인, 기권 의원 4인임)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38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영우 박민수 배재정  
(김태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38인, 기권 의원 3인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4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永 柱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응 래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걸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연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윤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자 스 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李 宰 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정 회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전 순 옥

**기권 의원(5인)**

김 윤 덕 배 재 정 이 춘 석 최 민 희  
 홍 문 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2인)**

장 기 윤 장 길 부 장 동 원 장 석 호  
 장 은 희 장 창 일 장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주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중 환  
 류 성 걸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종범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응래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연주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송광호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기권 의원(3인)**

원혜영    유승희    윤영석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5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길정우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응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연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관영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42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4인)**

강기윤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류문정	류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세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진식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상일	이명수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조진선	조진성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강길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3인)**

장기윤	장길부	장동원	장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원 유 철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낙 연	이 노 근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규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이 상 일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노 종 환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이 재	이 인 영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李 宰 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수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박 창 식	박 해 자	박 흥 근	배 기 운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흥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중 범	안 철 수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의 락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홍 의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원 유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반대 의원(1인)**

박 인 숙

**기권 의원(2인)**

민 병 주    신 기 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51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노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해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중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전 순 옥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중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나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재 영    李宰榮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이 장 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51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옹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윤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중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루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時局事件關聯教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4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중태  
 김중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연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찬열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광진

**기권 의원(8인)**

유대운 은수미 이노근 임수경  
 조현룡 주영순 진성준 최봉홍  
 (김기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51인, 찬성 의원 242인임)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38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중태 김중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찬성 의원(241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선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정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4인)**

金永柱 박덕흠 유대운 하태경

**기권 의원(2인)**

김을동 심재철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중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이 강 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정 희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9인)**

김 광 진	남 인 순	도 종 환	배 재 정
윤 후 덕	은 수 미	전 순 옥	진 선 미
진 성 준			

**기권 의원(18인)**

김 광 립	김 성 곤	김 용 익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현 미	김 희 국	신 계 룡
안 효 대	오 병 윤	이 낙 연	이 미 경
임 수 경	장 하 나	전 병 현	전 해 철

한 정 애 홍 의 락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19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정	나 성 립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홍 근	배 기 운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중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이 강 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노 응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李宰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장 병 완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장 윤 석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주 영 순	주 호 영	최 경 환	최 동 익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하 태 경	한 기 호	함 진 규	현 영 희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황 영 철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반대 의원(19인)**

김 광 진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용 익
남 인 순	도 중 환	배 재 정	신 계 룬
양 승 조	윤 후 덕	은 수 미	인 재 근
임 수 경	장 하 나	전 순 옥	정 청 래
진 선 미	진 성 준	홍 익 표	

**기권 의원(11인)**

김 현 미	김 희 국	박 혜 자	유 인 태
이 미 경	이 인 영	전 병 현	정 진 후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의 락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7인)**

강 기 윤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李宰榮	이 중 진	이 종 훈	이 주 영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고 희 선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김 영 주	金永柱	김 영 환	김 용 익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중 태	김 중 훈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최 동 익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천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김 형 태	김 희 선	김 희 국	김 희 정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흥	

**기권 의원(1인)**

황진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현	전정희
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5인)**

문병호	박혜자	은수미	장하나
전순옥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6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연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종진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진병헌 진순옥  
 정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최원식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최원호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3인)**

은수미 장하나 진선미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34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연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종진 이종진 이채익 이한성  
 임수경 임순옥 정갑윤 정세균  
 정진후 조경태 조해진 최원식  
 최원호 최봉홍 최원호 한기호  
 홍문종 홍일표 황주홍 황진하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장 하 나

**기권 의원(9인)**

김 도 읍	김 성 주	김 제 남	신 성 범
은 수 미	이 학 영	임 수 경	정 진 후
진 선 미			

○密航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3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고 회 선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성 완 중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배 재 정	신 계 룡	전 순 옥
-------	-------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42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세훈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5인)

신계륜	신기남	심상정	전순옥
하태경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33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연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진병헌 진순옥  
 정정희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박인숙

**기권 의원(7인)**

김상훈 문정림 민병주 서용교  
 안덕수 최경환 한기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3인)**

강기윤 강동원 강석호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중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심재철 심학봉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재중  
 유인태 유일호 유영석 윤재옥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인)**

부좌현 전순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4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전하진  
 장윤석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전해철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수성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정청래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조원진 주승용 최봉홍 최원식  
 최경환 최동익 최재천 추미애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길정우 서용교 한정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7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현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대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인)**

이춘석 전순옥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2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호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배 재 정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서 병 수	서 영 교	성 완 중	손 인 춘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송 광 호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룬	김 영 주	金 永 柱	김 영 환	김 용 익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김 춘 진	김 대 년	김 대 원	김 대 환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노 종 환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진 식	윤 후 덕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낙 연	이 노 근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이 미 경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민 수	박 민 식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윤 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종 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용 교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정 희	성 완 중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조 명 철	조 원 진	주 승 용	진 성 준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흥	최 원 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일 표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기권 의원(5인)**

김 정 록	서 용 교	윤 재 옥	전 순 옥
주 영 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6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고 회 선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진 태	김 진 표	김 대 원	김 대 환	김 한 표	김 현	김 형 태	김 회 선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웅 래	노 철 래	노 종 환	문 병 호	문 재 인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영 선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영 교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룬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덕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낙 연	이 명 수	이 명 수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한 기 호

**기권 의원(1인)**

오 병 윤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서 용 교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이 강 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임 내 현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전 정 희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문 헌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의 화  
 조 명 철 조 원 진 주 승 용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주 홍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전 순 옥

**기권 의원(6인)**

김 현 미 민 병 주 은 수 미 장 하 나  
 주 영 순 한 정 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1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4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세훈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燾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안규백 전순옥  
 (박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34인, 기권 의원 2인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金永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김중태	김중훈	김진태	김진표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윤명희	윤영석	윤진식	윤후덕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운석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식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순옥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익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황진하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운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반대 의원(2인)**

강동원 김제남

**기권 의원(8인)**

김상희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송호창 윤재옥 장하나 정진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정 호 준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8인)**

김 광 진    김 영 주    김 현 미    남 인 순  
 박 완 주    은 수 미    임 수 경    진 성 준

**기권 의원(10인)**

김 제 남    문 정 립    민 병 주    유 승 희  
 이 언 주    이 인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전 순 옥    황 영 철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이 강 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윤 석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宰榮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우 여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10인)**

강 동 원    김 광 진    김 제 남    남 인 순  
 박 완 주    박 원 석    서 기 호    정 진 후  
 진 성 준    황 영 철

**기권 의원(16인)**

김 경 협    김 재 연    김 태 흠    김 형 태  
 민 병 주    배 재 정    서 용 교    심 상 정  
 오 제 세    유 승 희    은 수 미    이 명 수  
 이 이 재    임 수 경    장 하 나    한 명 숙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金永柱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기 운    백 군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영 교    성 완 중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루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5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고 희 선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중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연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현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b>기권 의원(4인)</b>			
김우남	김형태	송광호	이노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5인)

장기윤	장길부	장동원	장석호
장은희	장창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중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김제남	김중태	김종훈	김진태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노철래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도중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이석현	이연주	이완영	이우현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서영교	서용교	성완중	손인춘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원식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홍문종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반대 의원(1인)**

최봉홍

**기권 의원(4인)**

신계륜    윤영석    전순옥    황주홍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8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윤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중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노철래
도중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연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경협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9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현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김영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39인, 반대의원 없음)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중태 김중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주영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익표 홍일표  
 황주홍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김영우 류성걸 문정림 배기운  
 이채익

(원혜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2인, 기권 의원 5인임)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26인)**

장기윤 장동원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준 김동완  
 김미희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윤덕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송호창 신경림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철수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희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익표

**반대 의원(31인)**

강은희 고희선 권성동 김성찬

김세연	김영우	김진태	김태원
김태흠	박덕흠	박성호	박인숙
송광호	심윤조	안홍준	여상규
유승우	윤명희	윤진식	이노근
이만우	이에리사	이장우	이종진
이주영	정갑윤	조명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황진하	

**기권 의원(44인)**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金永柱
김을동	김한표	김형태	김희선
노철래	민병주	성완중	손인춘
송영근	신동우	심재철	심학봉
안효대	염동열	원유철	유승민
윤영석	이강후	이명수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재영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정수성	주영순
최봉홍	현영희	홍문표	홍일표

(함진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26인, 반대 의원 31인임)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성완중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명철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황진하		

**기권 의원(15인)**

권성동	김광림	김도읍	김상훈
김성찬	김세연	박덕흠	송광호
신동우	이만우	이진복	이철우
이한성	최봉홍	한기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출석 의원(28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우남 김재경 김정록 김종훈 김태년 김학용 김현숙 김희정 노영민 류성걸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민식 박성호 박완주 박지원 배기운 변재일 서영교 손인춘 신경립 신성범 심상정 심학봉 안철수 여상규 오제세 원혜영 유승민 유인태 윤관석 윤재옥 이강후 이명수 이상규 이언주 이용섭 이윤석 이자스민 이종걸 이진복

김성찬 김영환 김윤덕 김재연 김정훈 김진태 김태원 김한표 김형태 나성린 노웅래 류지영 문희상 민홍철 박대출 박범계 박성효 박원석 배재정 부좌현 서용교 송광호 신계륜 신의진 심윤조 안규백 안홍준 염동열 우상호 유기준 유승우 유일호 윤명희 윤진식 이낙연 이목희 이상민 이에리사 이우현 이이재 이장우 이종진 이찬열

김성태 김영우 김용익 김을동 김재원 김제남 김진표 김태환 김현 남경필 노철래 문병호 민병두 박기춘 박덕흠 박병석 박수현 박인숙 박혜자 백균기 서기호 설훈 송영근 신기남 신장용 심재권 안덕수 안효대 오병윤 우원식 유기홍 유승희 유은혜 유정복 윤영석 은수미 이만우 이병석 이상일 이완구 이원욱 이인제 이재영 이종훈 이채익

김세연 김영주 김용태 김장실 김재윤 김중태 김춘진 김태흠 김현미 김희국 남인순 남도종환 문재인 박남춘 박민수 박상은 박영선 박주선 박홍근 백재현 서병수 성완중 송호창 신동우 신학용 심재철 안중범 양승조 오영식 원유철 유대운 유은혜 유정복 윤영석 이만우 이병석 이상일 이완구 이원욱 이인제 이재영 이종훈 이채익

이춘석 이한성 인재근 장윤석 전정희 정몽준 정세균 정진후 조경태 조해진 주호영 최경환 최봉홍 추미애 한선교 홍익표 황영철

이학영 이해찬 임내현 장하나 전하진 정문현 정수성 정청래 조명철 진선미 최규성 최원식 하태경 한정애 홍문표 홍일표 황우여

이학재 이현승 임수경 전병헌 전해철 정병국 정우택 정호준 조원진 주승용 진성준 최동익 최재성 한기호 함진규 홍영표 홍종학 황주홍

이한구 이현재 장병완 전순옥 정갑윤 정성호 정의화 정희수 조정식 주영순 진영 최민희 최재천 한명숙 현영희 홍지만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230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중태 김중훈 김진태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문정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범계 박민식 박성호 박성효 박원석 박혜자 배기운 배재정 부좌현 서용교 송광호 신계륜 신의진 심윤조 안규백 안홍준 염동열 우상호 유기준 유승우 유일호 윤명희 윤진식 이낙연 이목희 이상민 이에리사 이우현 이이재 이장우 이종진 이찬열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호창 신경립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연주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중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45인)

김광진 김기준 김명연 김미희  
 김선동 김성찬 김재연 김재윤  
 김제남 김종태 김한표 김형태  
 김희국 도종환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병석 박완주  
 서기호 서영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립 신의진 신장용 심상정  
 안철수 오병윤 유승민 유은혜  
 유인태 이병석 이상규 이원욱  
 이채익 이철우 임수경 정진후  
 진선미 진성준 최재성 함진규  
 홍익표

○청가 의원(11인)

강석훈 김기식 김태호 문대성  
 서상기 신경민 우윤근 유성엽  
 윤호중 이균현 이상직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정진석  
 입법차장 임병규  
 의사국장 전상수

○출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교육부장관 서남수  
 외교부장관 윤병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출석 정부위원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보고사항】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토교통	김무성	새누리당	2013. 4. 26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이완구		

○의안 제출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공직자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2013. 4. 26 김경협·이찬열·한정애·박범계·설훈·신계륜·홍영표·김관영·김태년·홍익표·장하나·이미경·우원식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서영교·배기운·박홍근·윤관석·전순옥·김상희·심재권·이상직·김광진·이윤석·전정희·박남춘·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인재근·남인순·유은혜·배기운·최규성·전순옥·최동익·이인영·이목희·우원식·한명숙·김광진·윤관석·윤후덕·한정애·서영교·노영민·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이진복·김장실·이상일·주호영·이헌승·염동열·박창식·이재영·서용교·

권은희 · 김동완 · 민현주 · 김현숙 · 홍지만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서영교 · 배기운 · 박홍근 · 김세연 · 윤관석 · 전순옥 · 김영환 · 이상직 · 김광진 · 이윤석 · 문병호 · 전정희 · 박남춘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서영교 · 배기운 · 박홍근 · 김세연 · 윤관석 · 심재권 · 이상직 · 김광진 · 이윤석 · 박남춘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장병완 · 조정식 · 윤관석 · 양승조 · 배기운 · 이종걸 · 최민희 · 김성주 · 유성엽 · 김광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송영근 · 정희수 · 이한성 · 손인춘 · 백군기 · 김광진 · 김성찬 · 한기호 · 권성동 · 김한표 · 김종태 · 황진하 ·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오영식 · 김춘진 · 진성준 · 부좌현 · 윤관석 · 전순옥 · 배기운 · 추미애 · 전정희 · 문병호 · 최민희 · 유성엽 · 홍의락 · 배재정 · 도종환 · 이춘석 · 안규백 · 이미경 · 김동철 · 한명숙 · 박홍근 · 임수경 · 유은혜 · 인재근 · 박혜자 · 조정태 · 양승조 · 민홍철 · 신기남 · 이원욱 · 우윤근 · 노영민 · 강기정 · 강창일 · 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4. 26 정부 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장병완 · 조정식 · 윤관석 · 양승조 · 배기운 · 이종걸 · 최민희 · 김성주 · 유성엽 · 김광진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강은희 · 강길부 · 신학용 · 이우현 · 이강후 · 김태원 · 이만우 · 류지영 · 서상기 ·

박창식 · 김현숙 · 전하진 · 홍지만 · 김성찬 · 민병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강은희 · 강길부 · 신학용 · 이강후 · 김태원 · 이만우 · 서상기 · 류지영 · 박창식 · 김현숙 · 전하진 · 홍지만 · 김성찬 · 민병주 의원 발의)

4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이주영 · 이재오 · 이만우 · 이종진 · 문정림 · 이한성 · 강기운 · 박인숙 · 박성호 · 이현재 의원 발의)

4월 2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임수경 · 이찬열 · 배기운 · 인재근 · 유대운 · 전순옥 · 문병호 · 강동원 · 남인순 · 전해철 · 박남춘 · 문재인 · 박범계 · 김민기 · 최민희 · 한명숙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이명수 · 김을동 · 이노근 · 이이재 · 안효대 · 강석호 · 이종진 · 정희수 · 심재권 · 강기운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이명수 · 이자스민 · 이강후 · 강기운 · 김세연 · 이장우 · 이현승 · 이노근 · 박상은 · 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이진복 · 이강후 · 김상훈 · 김한표 · 이현재 · 김장실 · 이상일 · 주호영 · 이현승 · 염동열 · 박창식 · 이재영 · 서용교 · 권은희 · 김동완 · 홍지만 의원 발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오영식 · 김춘진 · 진성준 · 부좌현 · 윤관석 · 전순옥 · 배기운 · 김태년 · 추미애 · 전정희 · 최민희 · 유성엽 · 홍의락 · 김성주 ·

은수미 · 이해찬 · 장병완 · 배재정 · 도종환 · 이학영 · 이춘석 · 안규백 · 이미경 · 김동철 · 한명숙 · 박홍근 · 임수경 · 유은혜 · 인재근 · 박혜자 · 조경태 · 양승조 · 민홍철 · 신기남 · 이원욱 · 우윤근 · 노영민 · 강기정 · 강창일 · 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서영교 · 배기운 · 박홍근 · 윤관석 · 전순옥 · 김상희 · 심재권 · 이상직 · 이윤석 · 유기홍 의원 발의)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주영순 · 김을동 · 서용교 · 배기운 · 이낙연 · 이만우 · 류지영 · 이한성 · 金永柱 · 정우택 · 조명철 · 김성태 · 정희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서영교 · 배기운 · 박홍근 · 윤관석 · 전순옥 · 최동익 · 김상희 · 심재권 · 이상직 · 이윤석 · 전정희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4. 26 정부 제출)

이상 3건 4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장병완 · 윤관석 · 양승조 · 배기운 · 이종걸 · 최민희 · 김성주 · 유성엽 · 김광진 · 유승희 의원 발의)

4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인재근 · 이인영 · 유승희 · 홍종학 · 서영교 · 김재윤 · 전순옥 · 김기준 · 김관영 · 이학영 · 김광진 · 임수경 · 이춘석 · 전병헌 · 남인순 · 이자스민 · 추미애 · 유은혜 · 최규성 · 김상희 · 한명숙 · 최동익 · 이목희 · 오영식 · 박완주 · 우원식 · 한정애 · 이해찬 · 노영민 · 전정희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3. 4. 26 인재근 · 전병헌 · 남인순 · 추미애 · 유은혜 · 배기운 · 최규성 · 박수현 · 전순옥 ·

최동익 · 한명숙 · 이인영 · 이목희 · 박완주 · 우원식 · 한정애 · 김광진 · 윤관석 · 이해찬 · 윤후덕 · 서영교 · 노영민 · 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제315회국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2013. 4. 29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7일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4. 26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4.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4. 26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2013. 4. 24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2013. 4. 26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製造物責任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23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2012. 7. 11 김영주 · 우윤근 · 김우남 · 박영선 · 김동철 · 원혜영 · 강기정 · 문병호 · 노웅래 · 홍영표 · 신장용 · 전병헌 · 김상희 · 조정식 · 김성곤 · 이상민 · 배기운 · 심재권 · 정성호 · 신경민 · 전하진 · 이춘석 · 민홍철 · 이종훈 · 강석훈 · 장병완 · 서영교 · 유대운 · 김기준 · 이상직 · 홍종학 · 김재윤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2. 8. 13 정부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2012. 7. 11 김영주 · 우윤근 · 김우남 · 박영선 · 김동철 · 원혜영 · 강기정 · 문병호 · 노웅래 · 홍영표 · 신장용 · 전병헌 · 김상희 · 조정식 · 김성곤 · 이상민 · 배기운 · 심재권 · 정성호 · 신경민 · 전하진 · 이춘석 · 민홍철 · 이종훈 · 강석훈 · 장병완 · 서영교 · 유대운 · 김기준 ·

이상직 · 홍종학 · 김재운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정무위원장 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23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24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보고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 폐지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2. 7. 27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0 이재영 · 이우현 · 서상기 · 민현주 · 김윤덕 · 김성찬 · 김태원 · 이만우 · 李宰榮 · 박인숙 · 이종진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2. 7. 5 인재근 · 신경민 · 이춘석 · 우원식 · 이인영 · 이목희 · 홍종학 · 유은혜 · 박완주 · 노영민 · 설훈 · 유인태 · 최동익 · 우윤근 · 홍익표 · 진성준 · 윤관석 · 노웅래 · 심재권 · 이상호 · 도종환 · 김태년 · 유대운 · 유승희 · 김광진 · 장하나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2. 8. 16 김춘진 · 정희수 · 유성엽 · 배기운 · 전정희 · 김성주 · 김윤덕 · 김세연 · 강동원 · 김성곤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4 민병주 · 이철우 · 김태원 · 정두언 · 서상기 · 조원진 · 김세연 · 강은희 · 이에리사 · 주영순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유기홍 · 김세연 · 김태년 · 김태원 · 박성호 · 서상기 · 유성엽 · 유은혜 · 이용섭 · 정성호 · 정진후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8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2013. 3. 11 최동익 · 배기운 · 이낙연 · 최원식 · 한정애 · 안홍준 · 한명숙 · 민홍철 · 전해철 · 문정림 · 도종환 · 남인순 · 전병헌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  
(2012. 7. 30 민홍철 · 윤후덕 · 조정식 · 남인순 · 김기준 · 부좌현 · 김관영 · 문병호 · 박남춘 · 서영교 · 김경협 · 홍의락 · 김현 · 진성준 · 김성곤 · 홍종학 · 강창일 · 김춘진 · 김우남 · 이용섭 · 김성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방위원장 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6. 14 이명수 · 오제세 · 김을동 · 문정림 · 강석호 · 김태원 · 정의화 · 김춘진 · 김태흠 · 박완주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2012. 9. 5 윤재옥 · 김동완 · 류지영 · 강기윤 · 강은희 · 박인숙 · 민병주 · 유승우 · 유재중 · 윤영석 · 이만우 · 이종진 · 주호영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0 김기선 · 권성동 · 김태원 · 윤상현 · 김명연 · 홍지만 · 이장우 · 정문헌 · 손인춘 · 박대출 · 김도읍 · 황영철 · 염동열 · 김희정 · 박성호 · 조해진 · 신의진 · 김춘진 · 이한성 의원 발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0 정부 제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2 정부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27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9 김태원 · 유기준 · 이명수 · 류지영 ·

김중훈 · 권은희 · 박인숙 · 심윤조 · 김재원 · 강기윤 · 강은희 · 성완중 · 이재영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7건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1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3 이명수 · 김을동 · 정희수 · 이이재 · 김태흠 · 박상은 · 한선교 · 염동열 · 이재영 · 안효대 · 오병윤 의원 발의)

**密航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23 정부 제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2. 9. 19 정부 제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24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2013. 3. 25 심상정 · 김제남 · 한명숙 · 박원석 · 서기호 · 정진후 · 유성엽 · 김춘진 · 강동원 · 김성곤 · 배기운 · 도종환 · 도종환 · 은수미 · 장하나 · 김태원 · 이해찬 · 남인순 · 홍영표 · 이미경 · 유기홍 · 주영순 · 홍종학 · 김경협 · 한정애 · 이완영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2012. 7. 27 이연주 · 김영환 · 김기준 · 박홍근 · 윤후덕 · 박범계 · 장병완 · 이미경 · 송호창 · 유인태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2. 7. 31 노웅래 · 우윤근 · 신장용 · 김용익 · 신경민 · 김재윤 · 김춘진 · 백재현 · 장병완 · 황주홍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2. 8. 29 이미경 · 강동원 · 신경민 · 백재현 · 전병헌 · 김성호 · 김재윤 · 민홍철 · 정성호 · 전순옥 · 김승남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2. 11. 19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2. 7. 4 김학용 · 박대동 · 김성찬 · 안홍준 · 원유철 · 강석호 · 이재영 · 김태원 · 이한성 · 함진규 · 이우현 · 고희선 · 강은희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2. 8. 13 윤상현 · 류지영 · 박대출 · 손인춘 · 이상일 · 이이재 · 정문헌 · 홍문중 · 홍지만 · 황영철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4 정부 제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3 백재현 · 유대운 · 심재철 · 이찬열 · 전해철 · 조정식 · 조정태 · 강기정 · 노영민 · 정청래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이노근 · 이명수 · 안효대 · 박수현 · 이종진 · 윤진식 · 이재균 · 이장우 · 조현룡 · 이재 · 이현승 의원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 신계륜 · 장하나 · 이상직 · 김경협 · 유성엽 · 배기운 · 오영식 · 홍의락 · 유대운 · 한명숙 · 전해철 · 문병호 · 박완주 · 신경민 · 김민기 · 민홍철 · 오제세 · 이종훈 · 심상정 · 최동익 · 유은혜 · 홍종학 의원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19 정부 제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012. 12. 27 정부 제출)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8. 9 이명수 · 정의화 · 김을동 · 정희수 · 김태원 · 민홍철 · 윤영석 · 김춘진 · 金永柱 · 김태흠 의원 발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4 이윤석 · 김을동 · 민홍철 · 박기춘 · 박수현 · 변재일 · 이미경 · 임내현 · 오병윤 · 윤후덕 · 주승용 의원 발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6 우윤근·배기운·김영록·박영선·  
노웅래·이상민·이종걸·정성호·김성곤·  
주승용 의원 발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2. 9. 6 안홍준·이한성·이만우·민홍철·  
김성태·이재영·유재중·최동익·김정록·  
문대성 의원 발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조현룡·황영철·김춘진·이한성·  
신성범·김기선·유정복·최봉홍·손인춘·  
서상기·원유철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2. 12. 14 이재균·이종진·정문현·안홍준·  
하태경·최봉홍·김희국·강기운·강석호·  
윤진식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2. 9. 5 이윤석·윤후덕·박수현·홍영표·  
문병호·박기춘·정성호·김동철·박혜자·  
민홍철·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서면답변서 제출****아동청소년 업무 일원화와 우리나라 입양상태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3. 4. 26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  
되었음

2013. 4. 3 국회사무처

2013. 4. 3 국회도서관

2013. 4. 5 국회예산정책처

2013. 4. 5 국회입법조사처

2013. 4. 15 대통령비서실

2013. 4. 15 국무총리비서실

2013. 4. 15 국무조정실

2013. 4. 15 감사원

2013. 4. 15 기획재정부

2013. 4. 15 통일부

2013. 4. 15 외교부

2013. 4. 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3. 4. 15 법무부

2013. 4. 15 국방부

2013. 3. 15 안전행정부

2013. 4. 15 교육부

2013. 4. 15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4. 15 미래창조과학부

2013. 4. 15 농림축산식품부

2013. 4. 15 해양수산부

2013. 4. 15 산업통상자원부

2013. 4. 15 보건복지부

2013. 4. 15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4. 15 환경부

2013. 4. 15 고용노동부

2013. 4. 19 국토교통부

2013. 4. 15 여성가족부

2013. 4. 15 법제처

2013. 4. 15 국가보훈처

2013. 4. 15 공정거래위원회

2013. 4. 15 금융위원회

2013. 4. 2 국가인권위원회

2013. 4.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 4. 10 대법원

2013. 3. 29 헌법재판소

2013.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 36건 소관 위원회에 회부

(이상 36건 부록으로 보존함)